



: 2018-03-05

## 인 천 지 방 법 원

### 제 1 4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6가합5447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5874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17. 12. 22.

판 결 선 고 2018. 1. 12.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117,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2018. 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가 2015. 9. 20. 오전(크로아티아 현지 시간임)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에서 사진촬영을 하던 중 실족하여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가 2015. 9. 20. 오전(크로아티아 현지 시간임)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에서 사진촬영을 하던 중 실족하여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다친 사고<sup>1)</sup>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8,467,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일반 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2015년 8월경 원고와 '크로아티아(두브로니크+플리트비체) 발칸4국 9일'(여행기간 2015. 9. 17.부터 2015. 9. 25.까지)이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

1) 본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 출발일: 한국출발 2015. 9. 17. 00:40, 현지도착 2015. 9. 17. 13:35
- 귀국일: 현지출발 2015. 9. 24. 12:55, 한국도착 2015. 9. 25. 12:05
- 예약인원: 최소출발인원 20명
- 방문도시: 인천-아부다비-베니스(1)-블레드-포스토이나(1)-크르크섬(1)-플리트비체-자다르(1)-스플리트-트로기르-두브로브니크(1)-모스타르-사라예보(1)-베오그라드(1)-아부다비-인천
- 여행국가: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세르비아/이탈리아

나. 이 사건 여행계약은 원고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을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이고, 원고의 직원인 해외인솔자 C가 인천공항에서부터 이 사건 여행계약에 참여한 여행객들과 전 일정을 동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15. 9. 20. 오전(크로아티아 현지 시각)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여행계약에 참여한 여행객들은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 공원 보행로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촬영하던 중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흉추 및 요추부위의 다발성 압박골절(흉추 제3, 4, 8, 11, 12번, 요추 1번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는 고스피치 산악특수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어 크로아티아의 D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2015. 9. 23. 슬로베니아의 루플라냐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2015. 10. 10.까지 입원하면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다음 대한민국에 귀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4, 5, 을 제8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친구들과 사진촬영을 하던 중 피고의 부주의 및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나 원고의 직원인 인솔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보행로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으므로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인 인솔자로서는 피고에게 추락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거나 피고와 동행하면서 피고의 사진촬영을 만류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적극적 손해 46,671,173원(기왕 치료비 24,002,945원 + 항공료 및 숙박비 7,642,192원 + 향후치료비 15,026,036원), 일실이익 31,796,664원(입원기간 동안 일실이익 1,950,747원 + 휴유장애에 따른 일실이익 29,845,917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28,467,8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



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 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여행계약은 원고의 직원인 현지인솔자가 여행객들을 전 일정 동안 동행하면서 외국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여행객들은 외국의 지리, 지형 등에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보행로 옆으로 나무와 풀이 줄지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그 안쪽으로 위험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노란색 끈이 한 줄 쳐져 있을 뿐이어서 낭떠러지의 존재나 그 깊이, 경사도 등을 초행자로



서는 알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한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폭이 넓지 않은 보행로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어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외여행인솔자로서는 여행객들이 낭떠러지 가까이로 접근하는 것을 접근하여 여행객들의 안전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인솔자는 피고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자 피고 등 일부 여행객을 제외한 다른 여행객들과 먼저 이동하였던 점, 현지인솔자는 원고의 이행보조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포함한 여행객들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피고가 화장실을 갔다가 일행에 합류할 때까지 피고를 기다려 동행하고 피고가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보행로 바로 옆에 위치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책임의 제한

피고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곧바로 여행객들을 인솔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보행로 바로 옆은 낭떠러지이므로 피고로서도 스스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보행로 옆 낭떠러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취지에서 노란색으로 된 끈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그 일행인 E, F와 보행로 가장자리에서 사진을 촬영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E, F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범위를 25%로 제한하기로 한다.

#### 5.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가. 재산상 손해

###### 1) 일실수입

###### ○ 인적사항

피고는 G생 여성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연령은 57세 11개월 23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 가동종료일 및 소득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5. 9. 20.부터 가동종료일인 원고가 60세가 되는 2017. 9. 27.까지 매월 22일 가동할 수 있고, 도시일용노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노임단가(원)
2015. 9. 1. ~ 2015. 12. 31.	89,566
2016. 1. 1. ~ 2016. 8. 31.	94,338
2016. 9. 1. ~ 2016. 12. 31.	99,882
2017. 1. 1. ~ 2017. 8. 31.	102,628
2017. 9. 1. ~ 2017. 9. 27.	106,84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1, 2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



: 2018-03-05

론 전체의 취지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9. 20.부터 2015. 10. 19.까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9. 20.부터 2015. 9. 23.까지는 크로아티아의 D 병원에서, 2015. 9. 23.부터 2015. 10. 10.까지는 슬로베니아의 루플라냐 대학병원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14.부터 2015. 10. 19.까지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2015. 10. 11.부터 2015. 10. 13.까지 3일 동안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앞서 본 사실과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외국에서의 치료와 국내로의 이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국내에 입국한 후 다시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2015. 9. 20.부터 2015. 10. 19.까지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

△ 2015. 10. 20.부터 2017. 9. 27.까지

이 사건 사료로 인하여 피고는 흉요추부 기구 고정술에 따른 척추의 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맥브라이드 척주손상 I-C-1-c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6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31,493,909원(구체적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 국외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20,046,59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국내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14.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외과 치료를 받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61,949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는 2015. 10. 14.부터 2015. 10. 19.까지 H병원에서 입원 치료, 2015. 10. 22.부터 2016. 4. 25.까지 통원치료에 따른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총 진료비가 6,040,184원이고 이 중 보험자부담액(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은 2,145,770원, 환자부담액(본인 부담액)은 3,894,400원인 사실[6,040,184원과 6,040,170원(2,145,770원 + 3,894,400원)의 차액 14원은 절삭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고의 전체 치료비 6,102,119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2,145,770원 + 피고 부담액 3,956,349원(61,949원 + 3,894,400원)]에서 먼저 피고의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 그 잔액 1,525,529원[6,102,119원 × (1 - 0.75)]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2,145,77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국내병원에서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항공료 및 숙박료: 7,642,192원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9. 20.부터 2015. 10. 10.까지 외국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흉추 및 요추 등에 수술을 받았으므로 수술 여부의 등의 등을 위하여 배우자의 출국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척추기능 노동능력상실률은 63%에 이르는바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배우자 등의 간호 등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느라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국내로 출발하는 2015. 9. 25.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고 새로이 귀국할 항공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를 돌보기 위하여 슬로베니아로 입국하면서 지출한 항공료 1,985,944원, 숙박비용 202,421원, 피고와 배우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지출한 항공료 구입비용 5,453,827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4) 향후치료비

○ 성형외과 치료비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는 다발성 반흔(총 41cm)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반흔 성형술 후 5회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는 8,717,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12. 23. 한 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현가하면 7,835,019원이 된다.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8,717,200원	2017-12-23	27	7,835,019원

○ 정형외과 치료비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후 유합상태(기구내 고정상태)로서 향후 기구제거 수술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는 2,207,72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2. 23. 한 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현가하면 1,984,299원이 된다.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2,207,721원	2017-12-23	27	1,984,299원

○ 신경외과 치료비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흉추 6-7-10번, 요추 1-2번 기구 고정술과 흉추 12번, 요추 1, 2번 척추 성형술을 시행받고 이로 인하여, 향후 1회 자기공명촬영으로 인한 검사료로 600,000원을, 향후 20년 동안 3개월마다 진찰료로 13,371원을, 향후 20년<sup>2)</sup> 동안 4개월마다 물리치료비로 20,000원을, 향후 20년 동안 1개월마다 교통비로 5,000원을, 향후 10년 동안 1개월마다 투약료로 27,875원<sup>3)</sup>을 지출해야 하는 사실을 인

2) 피고의 기대여명이 20년은 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피고의 투약료로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안정제, 소화제 900원/일 + 조제료 1500원/일: 10년간 = 3,345,500원'이 소요된다는 것인바, 계산의 편의상 이를 월별 투약료로 환산하면 27,875원(3,345,500원 ÷ 10년 ÷ 12개월)



정할 수 있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2. 23. 위 각 치료비를 지출하거나(검사료) 최초로 지출(진찰료, 물리치료비, 교통비, 투약료)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하면 합계 3,468,631원(검사료 539,280원 + 진찰료 553,607원 + 물리치료 773,730원 + 교통비 243,652원 + 투약료 1,358,362원, 구체적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이 된다.

#### 5) 재산적 손해액

앞서 본 사실을 기초로 피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하면 18,117,661원 [(일실수입 31,493,909원 + 기왕치료비 20,046,596원 + 항공료 및 숙박료 7,642,192원 + 향후치료비 13,287,949원(성형외과 치료비 7,835,019원 + 정형외과 치료비 1,984,299원 + 신경외과 치료비 3,468,631원)) × 25%]이 된다.

####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피고의 나이와 직업, 생활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6,117,661원 (재산적 손해 18,117,661원 + 정신적 손해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9.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

이 된다.



: 2018-03-05

이익도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6,117,6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9.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풍
	판사	황여진
	판사	이병호



: 2018-03-05

별지 1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원)	일수(일)	월소득(원)	상실률 (%)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	기간 일실수입 (원)
1	2015-9-20	2015-10-19	89,566	22	1,970,452	100.00 %	1	0.9958	0	0.0000	1	0.9958	1,962,176
2	2015-10-20	2015-12-31	89,566	22	1,970,452	63.00%	3	2.9752	1	0.9958	2	1.9794	2,457,196
3	2016-1-1	2016-8-31	94,338	22	2,075,436	63.00%	11	10.7334	3	2.9752	8	7.7582	10,144,037
4	2016-9-1	2016-12-31	99,882	22	2,197,404	63.00%	15	14.5205	11	10.7334	4	3.7871	5,242,726
5	2017-1-1	2017-8-31	102,628	22	2,257,816	63.00%	23	21.9199	15	14.5205	8	7.3994	10,525,084
5	2017-9-1	2017-9-27	106,846	19	2,030,074	63.00%	24	22.8290	23	21.9199	1	0.9091	1,162,690
												일실수입 합계액 (원):	31,493,909



별지 2

향후치료비

○ 검사료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600,000원	2017-12-23	27	539,280원

○ 진찰료

종류:	진찰료	수명:	
단가:	13,371		3
최 초 필 요 일:	2017-12-23	수치합계	41.4036
필 요 최 중 일:	2037-12-22	비용총액	553,607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7-12-23	27	0.8988
2	2018-3-23	30	0.8888
3	2018-6-23	33	0.8791
4	2018-9-23	36	0.8695
5	2018-12-23	39	0.8602
6	2019-3-23	42	0.8510
7	2019-6-23	45	0.8421
8	2019-9-23	48	0.8333
9	2019-12-23	51	0.8247
10	2020-3-23	54	0.8163
11	2020-6-23	57	0.8080
12	2020-9-23	60	0.8000
13	2020-12-23	63	0.7920
14	2021-3-23	66	0.7843
15	2021-6-23	69	0.7766
16	2021-9-23	72	0.7692
17	2021-12-23	75	0.7619
18	2022-3-23	78	0.7547
19	2022-6-23	81	0.7476



: 2018-03-05

20	2022-9-23	84	0.7407
21	2022-12-23	87	0.7339
22	2023-3-23	90	0.7272
23	2023-6-23	93	0.7207
24	2023-9-23	96	0.7142
25	2023-12-23	99	0.7079
26	2024-3-23	102	0.7017
27	2024-6-23	105	0.6956
28	2024-9-23	108	0.6896
29	2024-12-23	111	0.6837
30	2025-3-23	114	0.6779
31	2025-6-23	117	0.6722
32	2025-9-23	120	0.6666
33	2025-12-23	123	0.6611
34	2026-3-23	126	0.6557
35	2026-6-23	129	0.6504
36	2026-9-23	132	0.6451
37	2026-12-23	135	0.6400
38	2027-3-23	138	0.6349
39	2027-6-23	141	0.6299
40	2027-9-23	144	0.6250
41	2027-12-23	147	0.6201
42	2028-3-23	150	0.6153
43	2028-6-23	153	0.6106
44	2028-9-23	156	0.6060
45	2028-12-23	159	0.6015
46	2029-3-23	162	0.5970
47	2029-6-23	165	0.5925
48	2029-9-23	168	0.5882
49	2029-12-23	171	0.5839
50	2030-3-23	174	0.5797
51	2030-6-23	177	0.5755
52	2030-9-23	180	0.5714
53	2030-12-23	183	0.5673
54	2031-3-23	186	0.5633
55	2031-6-23	189	0.5594
56	2031-9-23	192	0.5555
57	2031-12-23	195	0.5517
58	2032-3-23	198	0.5479
59	2032-6-23	201	0.5442
60	2032-9-23	204	0.5405





○ 물리치료비

종류:	물리치료비	수명:	
단가:	20,000		4
최초 필요일:	2017-12-23	수치합계	38.6865
필요최종일:	2037-12-22	비용총액	773,730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7-12-23	27	0.8988
2	2018-4-23	31	0.8856
3	2018-8-23	35	0.8727
4	2018-12-23	39	0.8602
5	2019-4-23	43	0.8480
6	2019-8-23	47	0.8362
7	2019-12-23	51	0.8247
8	2020-4-23	55	0.8135
9	2020-8-23	59	0.8026
10	2020-12-23	63	0.7920
11	2021-4-23	67	0.7817
12	2021-8-23	71	0.7717
13	2021-12-23	75	0.7619
14	2022-4-23	79	0.7523
15	2022-8-23	83	0.7430
16	2022-12-23	87	0.7339
17	2023-4-23	91	0.7250
18	2023-8-23	95	0.7164
19	2023-12-23	99	0.7079
20	2024-4-23	103	0.6997
21	2024-8-23	107	0.6916
22	2024-12-23	111	0.6837
23	2025-4-23	115	0.6760
24	2025-8-23	119	0.6685
25	2025-12-23	123	0.6611
26	2026-4-23	127	0.6539
27	2026-8-23	131	0.6469
28	2026-12-23	135	0.6400
29	2027-4-23	139	0.6332
30	2027-8-23	143	0.6266
31	2027-12-23	147	0.6201
32	2028-4-23	151	0.6138



33	2028-8-23	155	0.6075
34	2028-12-23	159	0.6015
35	2029-4-23	163	0.5955
36	2029-8-23	167	0.5896
37	2029-12-23	171	0.5839
38	2030-4-23	175	0.5783
39	2030-8-23	179	0.5727
40	2030-12-23	183	0.5673
41	2031-4-23	187	0.5620
42	2031-8-23	191	0.5568
43	2031-12-23	195	0.5517
44	2032-4-23	199	0.5466
45	2032-8-23	203	0.5417
46	2032-12-23	207	0.5369
47	2033-4-23	211	0.5321
48	2033-8-23	215	0.5274
49	2033-12-23	219	0.5228
50	2034-4-23	223	0.5183
51	2034-8-23	227	0.5139
52	2034-12-23	231	0.5095
53	2035-4-23	235	0.5052
54	2035-8-23	239	0.5010
55	2035-12-23	243	0.4968
56	2036-4-23	247	0.4928
57	2036-8-23	251	0.4887
58	2036-12-23	255	0.4848
59	2037-4-23	259	0.4809
60	2037-8-23	263	0.4771

○ 교통비

종류:	교통비	수명:	
단가:	5,000		1
최 초 필 요 일:	2017-12-23	수치합계	48.7305
필 요 최 종 일:	2037-12-22	비용총액	243,652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7-12-23	27	0.8988



: 2018-03-05

2	2018-1-23	28	0.8955
3	2018-2-23	29	0.8921
4	2018-3-23	30	0.8888
5	2018-4-23	31	0.8856
6	2018-5-23	32	0.8823
7	2018-6-23	33	0.8791
8	2018-7-23	34	0.8759
9	2018-8-23	35	0.8727
10	2018-9-23	36	0.8695
11	2018-10-23	37	0.8664
12	2018-11-23	38	0.8633
13	2018-12-23	39	0.8602
14	2019-1-23	40	0.8571
15	2019-2-23	41	0.8540
16	2019-3-23	42	0.8510
17	2019-4-23	43	0.8480
18	2019-5-23	44	0.8450
19	2019-6-23	45	0.8421
20	2019-7-23	46	0.8391
21	2019-8-23	47	0.8362
22	2019-9-23	48	0.8333
23	2019-10-23	49	0.8304
24	2019-11-23	50	0.8275
25	2019-12-23	51	0.8247
26	2020-1-23	52	0.8219
27	2020-2-23	53	0.8191
28	2020-3-23	54	0.8163
29	2020-4-23	55	0.8135
30	2020-5-23	56	0.8108
31	2020-6-23	57	0.8080
32	2020-7-23	58	0.8053
33	2020-8-23	59	0.8026
34	2020-9-23	60	0.8000
35	2020-10-23	61	0.7973
36	2020-11-23	62	0.7947
37	2020-12-23	63	0.7920
38	2021-1-23	64	0.7894
39	2021-2-23	65	0.7868
40	2021-3-23	66	0.7843
41	2021-4-23	67	0.7817
42	2021-5-23	68	0.7792
43	2021-6-23	69	0.7766



44	2021-7-23	70	0.7741
45	2021-8-23	71	0.7717
46	2021-9-23	72	0.7692
47	2021-10-23	73	0.7667
48	2021-11-23	74	0.7643
49	2021-12-23	75	0.7619
50	2022-1-23	76	0.7594
51	2022-2-23	77	0.7570
52	2022-3-23	78	0.7547
53	2022-4-23	79	0.7523
54	2022-5-23	80	0.7500
55	2022-6-23	81	0.7476
56	2022-7-23	82	0.7453
57	2022-8-23	83	0.7430
58	2022-9-23	84	0.7407
59	2022-10-23	85	0.7384
60	2022-11-23	86	0.7361

○ 투약료

종류:	투약료	수명:	
단가:	27,875		1
최 초 필 요 일:	2017-12-23	수치합계	48.7305
필 요 최 중 일:	2027-12-22	비용총액	1,358,36
			2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7-12-23	27	0.8988
2	2018-1-23	28	0.8955
3	2018-2-23	29	0.8921
4	2018-3-23	30	0.8888
5	2018-4-23	31	0.8856
6	2018-5-23	32	0.8823
7	2018-6-23	33	0.8791
8	2018-7-23	34	0.8759
9	2018-8-23	35	0.8727



: 2018-03-05

10	2018-9-23	36	0.8695
11	2018-10-23	37	0.8664
12	2018-11-23	38	0.8633
13	2018-12-23	39	0.8602
14	2019-1-23	40	0.8571
15	2019-2-23	41	0.8540
16	2019-3-23	42	0.8510
17	2019-4-23	43	0.8480
18	2019-5-23	44	0.8450
19	2019-6-23	45	0.8421
20	2019-7-23	46	0.8391
21	2019-8-23	47	0.8362
22	2019-9-23	48	0.8333
23	2019-10-23	49	0.8304
24	2019-11-23	50	0.8275
25	2019-12-23	51	0.8247
26	2020-1-23	52	0.8219
27	2020-2-23	53	0.8191
28	2020-3-23	54	0.8163
29	2020-4-23	55	0.8135
30	2020-5-23	56	0.8108
31	2020-6-23	57	0.8080
32	2020-7-23	58	0.8053
33	2020-8-23	59	0.8026
34	2020-9-23	60	0.8000
35	2020-10-23	61	0.7973
36	2020-11-23	62	0.7947
37	2020-12-23	63	0.7920
38	2021-1-23	64	0.7894
39	2021-2-23	65	0.7868
40	2021-3-23	66	0.7843
41	2021-4-23	67	0.7817
42	2021-5-23	68	0.7792
43	2021-6-23	69	0.7766
44	2021-7-23	70	0.7741
45	2021-8-23	71	0.7717
46	2021-9-23	72	0.7692
47	2021-10-23	73	0.7667
48	2021-11-23	74	0.7643
49	2021-12-23	75	0.7619
50	2022-1-23	76	0.7594
51	2022-2-23	77	0.7570



.  
.  
: 2018-03-05

52	2022-3-23	78	0.7547
53	2022-4-23	79	0.7523
54	2022-5-23	80	0.7500
55	2022-6-23	81	0.7476
56	2022-7-23	82	0.7453
57	2022-8-23	83	0.7430
58	2022-9-23	84	0.7407
59	2022-10-23	85	0.7384
60	2022-11-23	86	0.7361